

# 워싱턴 주의 퇴거 일시 정지는 다수는 정지시키나 전부는 아닙니다.

## 2020 년 10 월 15 일까지



당신은 임대료 체납 또는 “무사유” 이유로 퇴거될 수 없습니다.  
또한 14일 또는 20일 계약 만료 통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.



만약 당신이 즉각적이고도 중대한 보건 및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, 여전히 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.

퇴거 유예를 받더라도 미불 임대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! 지금 임대료를 지불하지 그렇지 않으면 10 월 15 일 이후 퇴거 당할 수도 있습니다!

만약 당신이 임대료 전액을 지불할 수 없으면, 임대주가 적절한 지불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. 어떤 계획이던지 임대주와 서면으로 작성하여 받으십시오. 임대주에게 줄 편지의 견본은 [www.WashingtonLawHelp.org](http://www.WashingtonLawHelp.org) 에서 찾아보십시오.

임대주가 당신을 퇴거하려고 하면, 즉시 법률적 도움을 구하십시오.

▶ 당신이 킹 카운티 안에  
있으면, 211 또는 (253)  
234-4204로

**Housing Justice Project**  
에 전화하십시오.



▶ 당신은 또한 [www.atg.wa.gov](http://www.atg.wa.gov)  
또는 (833) 660-4877로 워싱턴  
주 검찰에 소장을 제출할 수  
있습니다. [www.atg.wa.gov](http://www.atg.wa.gov) or  
(833) 660-4877.

▶ 당신이 워싱턴 주의 다른 카운티에  
있으면, 주중 오전 9:15부터 - 12:15까지  
NJP의 CLEAR 긴급 통화선 **1-888-201-1014**  
으로 전화하십시오. pm.

임대주에게 보내는 견본 서신들과 더  
많은 무료 법률정보, 양식 및 영상물들을  
[www.WashingtonLawHelp.org](http://www.WashingtonLawHelp.org) 에서  
찾아 보십시오.